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2-03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71821 취득세등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시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6. 원고에게 한 취득세 82,185,780원, 지방교육세 14,323,590원의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2-03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B'이었다)는 부동산 매매업, 컨설팅 및 관련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2008. 1. 22. 설립된 법인이다. C은 2013. 2. 12. 원고의 주식 100%를 양수하였고, 같은 날 종전의 사내이사, 감사가 모두 사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 사내이사 및 감사가 취임하였다가, 2013. 5. 20. C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원고의 상호를 현재와 같이 '주식회사 A'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31. ○○시 ○○구 D건물 E호(토지 45.55㎡, 건물 151.47㎡,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1,320,97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2,839,000원, 지방교육세 5,283,900원, 농특세 2,641,950원 등 합계 60,764,8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에서도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에서도 같다)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휴면법인 인수에 따른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1. 4. 6.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82,185,780원, 지방교육세 14,323,590원 등 합계 96,509,370원(기납부세액 제외, 납부지연가산세 포함)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청구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2-03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법인은 원고가 인수할 무렵 사업실적이 있었으므로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시장은 2016년경 세무조사를 한 뒤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법인이 휴면법인임을 전제로 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휴면법인 해당 여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는 휴면법인의 요건으로,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을 것,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교체되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이 원고를 인수한 날 원고의 임원이 전원 교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갑 제5~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2008~2012 사업연도에 관하여 작성된 손익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 원고는 2011 및 2012 사업연도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2-03

(단위: 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매출액		50,000,000	9,090,909	-	-	-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	27,963,210	13,159,260	1,400,000	-	-
	보험료	333,270	123,190	-	-	-
	복리후생비	705,660	2,291,270	796,930	-	-
	접대비	918,500	5,719,146	3,152,200	3,835,967	3,261,500
	세금과 공과	848,880	73,780	139,370	64,670	-
	대손상각비	5,350,000	-	-	-	-
	기타(지급 수수료)	6,877,832	2,723,416	2,709,416	2,712,016	2,140,762
	합계	42,997,352	24,090,062	8,197,916	6,612,653	5,402,262
영업외수익		5,056,701	462,850	113	926,043	4,190,470
영업외 비용	이자 비용	21,158,794	49,590,819	10,192,645	24,800,205	4,484,890

즉 원고는 2008~2009 사업연도에는 급여·보험료·복리후생비 등을 지출하고 매출도 발생하였으나, 2010 사업연도부터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C에 의해 인수되기 2년 전인 2011~2012 사업연도에는 급여·보험료·복리후생비 지출도 전혀 없었다. 원고는 2008~2012 사업연도에 접대비와 지급수수료 명목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용도나 원고 사업과의 관련성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1~2012 사업연도에도 부동산 컨설팅 관련한 사업 준비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활동내역을 알 수 있는 법인 장부, 각종 계약서나 신고서 등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인수일인 2013. 2. 12.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휴면법인'에 해당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2-03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8940 판결 참조).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시장이 2016. 7. 11.경 원고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대상 사업기간: 2013년~2015년)를 하면서 원고가 2015. 3.경 ○○시 ○○구 F에 신축한 건축물의 현황, 과세표준 등을 확인한 사실, ○○시장은 위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부동산 취득이 휴면법인 인수에 따른 것인지에 관하여도 조사하였으나 휴면법인 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세액을 산정하여 2016. 8.경 원고에게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7. 7. 3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시장이 원고에게 보낸 위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문서(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에는 원고가 휴면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위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위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시 소속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2-03

공무원은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동안 법인세 신고를 하고 납세 의무를 이행하여 사업실적이 없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향후 세무조사 시 휴면법인 인수 관련 사업실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위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를 받고 피고 또는 ○○시장에게 휴면법인 해당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피고 또는 ○○시장이 이에 대해 회신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무효사유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2-03

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휴면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그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여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2-03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2-03

①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등의 비율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끝.